

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2 . 10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 2. 10
- 다. 상정일자 : 제74회 평창군의회(임사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2.10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경제과장 석명준)

가. 제 안 이 유

-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정책변경으로 현재 시행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고.
-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코저 하는것임.

나. 주 요 내 용

-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중 현재 추진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폐지(지붕개량, 균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설치, 자치단체간 직접시행한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, 변소개량,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)
-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폐지(융자 및 보조금 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제도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□ 관련법을 보면

-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및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설치에 관한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

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□ 내용검토 결과

- 그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많이 변하였고 정책 또한 변경으로 현재 시행되지 않고있는 “지방개량사업,군지역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,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융자금, 변소개량 융자금, 태양열 이용시설융자금등의 사업과 함께 융자 및 보조금 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2인이상의 연대 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
- 이러한 규제를 폐지 정비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이나 타법령 및 자구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. 끝